

현장실습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37조에 의거 국내·외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제 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간에 합의한 기간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현장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③“현장실습생”이란 학점 인정 및 실무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제3조(실습구분 및 기간) ①현장실습 운영시점과 기간에 따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 동계계절학기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현장실습은 수행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③국내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6.)

1. 계절제 현장실습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4주(주5일×1일 8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12.26.)

2. 학기제 현장실습은 정규학기 중에 실시하며 기간은 4개월(16주×주5일×1일 8시간)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12.26.)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④국외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12.26.)

1. 계절제 국외 현장실습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현지 적응 교육 2주, 현장실습은 6주(주5일×1일×8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12.26.)

2. 학기제 국외 현장실습은 정규학기중에 실시하며, 기간은 현지적응 교육 2주, 현장실습은 16주(주5일×1일×8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12.26.)

⑤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현장실습에

3-3-16~2 제3편 행 정

참여하는 경우나 기타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각각 실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2018.05.29.)

- 제4조(신청자격)** ①현장실습수업 신청은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 한다.
②국내 계절제 현장실습 수업은 4학기 이수자부터~7학기(5년제 학과는 9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6.11.29.)
③국내 학기제 현장실습 수업은 5학기(5년제 학과는 7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다만 수업년한을 초과한 자는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④국외현장실습수업은 재학생 중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능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 제5조(신청절차)** ①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②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실습비 지급 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 규모, 실습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의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할 경우 대학과 학생의 서면동의에 의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설 2016.11.29.)

제5조의 2(현장실습 제외기준 및 조치사항 등)①현장실습의 취지 및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29.)

1.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2.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3.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제5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의 3(신청절차 및 학생지원) ①국내·외 현장실습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②국외현장실습수업인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선발된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신청금 및 제반경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대학은 실습시간, 실습지원비, 비자발급 등의 절차를 지원한다.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현장실습수업 학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학점은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부여하며, 등급은 P 또는 F로 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수자가 부·복수 복수전공시에는 현장실습학점을 부·복수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 계절제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며, 이수학생은 3학점을 부여하고 재학 중 3회에 걸쳐 9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계절제 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과목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과정을 통해 취득가능한 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3. 학기제 현장실습은 학기단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하며, 이수 학생은 최대 12학점까지(단, 국외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대 15학점까지)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학기제 현장실습수업을 5분의 4이상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질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의무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③현장실습 학점인정은 기업관계자 및 담당교수 및 학과(부)장이 학생의 현장실습결과 보고서, 출근부, 현장실습평가서, 수행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형 학점인정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현장실습기업체 지도관리)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학생의 실습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및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0조(현장실습생의 의무)현장실습학점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하며, 현장실습 실습생은 현장학습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수업을 완료한 학생은 현장학습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관련 내

3-3-16~4 제3편 행 정

용을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2. 현장학습기관의 관련규정 및 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학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학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현장학습에 관련되는 주요사항

제11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학습 중 실습기관 관련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고의적으로 현장학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기타 현장학습에 관련되는 주요사항

제12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이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6.11.29.)

가천대학교 현장실습 실습기관 신규등록서(기관용)

실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업종		소재지	
홈페이지			
우편번호			
주소			
직원수			
실습기관소개			
실습기관분류 (택 1)	연구기관 /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 / 대학 / 기타		
실습분야 (택 1)	일반사무 / 제조업 / 컴퓨터 관련업 / 유통업 / 무역·금융업 / 기타		
<p>본 기관(업체)는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오며 귀 대학의 현장실습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 . .</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회사 성명 : _____ (인)</p>			

3-3-16~6 제3편 행 정

(별표 2) (신설 2016.11.29.)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관용)

현장실습명	2016학년도 가천대학교 _____ 현장실습		
실습기관			
섭외교수			
현장실습 책임자		전화번호 (직통)	
이메일		핸드폰	
현장실습 담당부서		직위	
담당업무			
실습기간			
선발대상	전공() / 인원 () 명 / 성별()		
자격사항			
실습내용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숙식제공여부		교통비제공 여부	
근무시간		실습지원비	
<p>본 기관(업체)는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오며 귀 대학의 현장실습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 . .</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회사 성명 : _____ (인)</p>			

(별표 4) (신설 2016.11.29.)



현장실습 협약서

(현장실습기관)(이하 “갑”이라한다)와 가천대학교(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소속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_____ ~ _____ 으로 운영하며 장소는 “갑”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등)으로 한다.

제 2조 (실습시간)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4주 또는 16주를(160시간 또는 640시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하며, 최소 160시간 또는 64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 3조 (“을”의 의무) “을”은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①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 ② “갑”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③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한다.
- ④ 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 4조 (“갑”의 의무)

- ① “갑”은 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갑”은 실습생이 현장실습기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 ③ 만약,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을”의 담당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협의 하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 5조 (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실시 사항, 즉
출근상황부, 현장실습 기관평가서, 실습일지를 현장실습 확인서와 함께 실습 종료 후 “을”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조 (기타)

-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협약은 “갑”,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 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 :

학교명 : 가천대학교

부 서 :

부서명(학과) :

부서장 : _____(인)

부서장 또는 협약 교수 :

_____ (인)

3-3-16~10 제3편 행 정

(별지서식 1호) (삭제 2013.12.26.)

(별지서식 2호) (삭제 2013.12.26.)

(별지서식 3호) (삭제 2013.12.26.)

(별지서식 4호) (삭제 2013.12.26.)

(별지서식 5호) (삭제 2013.12.26.)

(별지서식 6호) (삭제 2013.12.26.)

(별지서식 7호) (삭제 2013.12.26.)